



U.S. Department of Labor Wage and Hour Division

요약문서 #6: 공정근로기준법상의 소매업

이 요약문서는 소매업종의 근로자에 대한 공정근로기준법의 적용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특징

소매업체는 연간 총매출의 75% 이상이 재판매가 아니며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 또는 서비스제공) 업계에서 소매업으로 알려진 업체를 말한다. 소매업체의 예는 다음과 같다: 자동차 정비업소, 볼링장, 개스스테이션, 가전용품 수리업소, 백화점, 식당. 소매업체가 아닌 예는 회계사무회사, 의사사무실, 건설업체, 라디오/TV 스테이션등이다.

적용범위

소매업체의 근로자는 두가지중 하나의 방법으로 공정근로기준법에 적용될 수 있다. 하나는 연간 총매출액이 \$500,000 이상 되는 경우 (물품세-excise tax-를 제외한 총매출액)이고 다른 하나는 연간 총매출액에 관계없이 타주와의 상업활동 (interstate commerce)에 관계해 개인적 차원에서 법에 적용되는 경우다. 이 활동의 예는 다음과 같다: 다른 주에서 물품을 주문, 크레딧카드 확인.취급, 다른 주에 전화나 편지로 연락, 타주와의 거래기록보관, 타주로부터의 물품 수취.취급.우송등.

규정

규정에 적용되는 예외되지 않은 소매업체는 기준법상의 임금지급 및 미성년자 고용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규정적용에서 면제되지 않는 노동자는 연방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다. 오버타임 수당은 주당 40시간 이상 근무시간에 대해 노동자의 정규 시간당 임금의 1.5배로 지급해야 한다.

청소년최저임금: 공정근로기준법에 대한 1996년의 수정안은 20세 미만의 근로자에게 고용후 첫 90일 동안 (달력상 90일로 휴일등 모든 날짜포함)은 시간당 \$4.25 이상의 최저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 법은 고용주가 청소년 최저임금으로 고용하기 위해 기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을 금지하는 노동자보호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공정근로기준법의 미성년자조항은 비농업분야의 직종에 14세 미만 미성년자의 고용을 금지하며 14.15세 미성년자의 근로시간과 직종을 제한하며 16.17세 미성년자의 위험직업 고용을 금지하고 있다.

기준법은 기록보관 규정에 따라 고용주가 임금, 시간과 다른 사항들에 대한 기록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저임금과 오버타임 수당규정에 적용되는 노동자에 대해 29 CFR Part 516에 따라 기록들이 보관

되어야 한다. 기준법에서 면제되는 노동자에 대한 기록은 면제되지 않는 근로자나 특별한 형식으로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자, 식사.숙박이 제공되는 근로자에 대한 기록보관과는 다르다.

일반적인 문제점들

근로시간: 고용주는 “작업시작을 기다리며 준비하는”시간과 같이 고용주가 통제하는 모든 시간을 포함한 모든 근로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고 기록해야 한다. 노동자가 정해진 시간에 하게 되었다면 고용주는 그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 그러나 만약 고용주가 즉시 근로자가 필요치 않을 때 다시 시작할 시간을 알려주고 근로자가 근무에서 완전히 해방된 상태에서 그 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면 이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계산하지 않아도 된다. 반대로 근로자가 다시 필요할 때까지 기다리도록 하고 그동안의 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시 시작하는 특정 시간이 주어지지 않은 경우 기다리는 모든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계산되어야 한다.

불법공제: 근로자의 임금에서 계산대에서 모자란 현금이나 물건도난, 규정된 유니폼, 작업기구등 비용을 공제해 법적 최저임금이나 오버타임임금이 제한되는 것은 불법이다.

월급 근로자: 월급을 지급받는다든 사실 하나로는 근로자는 최저임금이나 오버타임규정에서 면제되지 않는다. 최저임금과 오버타임규정에서 면제여부는 맡은 임무와 작업내용, 월급액수에 달려있다. 흔히, 소매업종에서 월급 근로자는 오버타임지급 예외규정에 적용되지 않는다. 29 CFR 파트 541은 공정근로기준법상 예외규정을 설명하고 있다 (컴퓨터 전문가와 야외 세일즈맨을 포함한 간부.행정.전문 근로자등).

더 자세한 정보를 얻으려면

더 자세한 정보는 임금시간과 인터넷 사이트 <http://www.wagehour.dol.gov> 또는 오전 8시에서 오후 5시까지 무료전화 1-866-4USWAGE (1-866-487-9243)에 하면 얻을 수 있다.

이 문서는 미연방 노동부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요약 문건의 하나로 전반적인 소개를 위한 것으로 법적인 견해로서 효력은 없다.

U.S. Department of Labor
Frances Perkins Building
200 Constitution Avenue, NW
Washington, DC 20210